

정수 물 품 취 득 동 의 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9. 2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9월 10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9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9. 20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강우)

가. 제안이유

'93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지침 및 '93 세정 업무 전산화 시책, 특수시책의 하나로 설치된 간이예식장 이용자 편의 제공, 오수·정화조 전산 처리,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압류 및 해지 등록 업무 위임, 행정 전산망 확충에 따른 최소한의 정수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구 분	품 목	수 량	소 요 예 산
계	5	14	19,309,000원
신 규 취 득	4	13	18,309,000원
대 체 취 득	1	1	1,00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심완택)

의회사무국의 4개과에서 요청한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압류·해지 업무 전산용, 세무 1, 2과의 시세 및 구세의 전산관리용, 청소과의 오수, 분뇨 정화조의 전산관리용, 의회사무국의 속기록 변문용 등이며

기획감사실의 정사진카메라는 환경순찰 증거 채집용이며, 신평2동 온풍난방기는 간이예식장이용자 편의제공용이고 의회사무국 비디오카메라는 의정활동 홍보촬영용 등 행정장비로써 전량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